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2006838(본소), 2024나2006845(반소) 판결 [용역대금
등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2006838(본소), 2024나2006845(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13266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환준

변론종결 2024. 8. 30.

판결선고 2024. 10. 18.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132668(본소), 2023

가단104752(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00,71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8.부터 2024. 10.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10,84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18,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18,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2. “피고들 소유의 평택시 D, E, F, G, H, I, J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0필지 위에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연면적 753.87평. 근린생활시설 5실, 공동주택 16세대)을 신축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프로젝트 매니징,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건축설계용역비 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공사비 5,012,000,000원(매입세,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192,0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신축 프로젝트 턴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내용을 일부 달리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020. 5. 25.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53.81평. 근린생활시설 14개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3,9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2020. 6. 10.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2.58평)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3,7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1)를 작성하였다.

3) 2020. 7. 1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2.58평)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3,4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4) 2020. 7. 31.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602.58평)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3,3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하였다.

5) 2020. 8.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80평)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2,74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① 2020. 7. 15.경 ”갑(피고들)은 주택보증공사(이하 ‘HUG’라고 한다)
용자로 위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면서 HUG 기금 신청 제출용 개발 사업보고서 작성 및 투시도
용역비 3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을(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급시기는 개발 사업보고서
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지급 약속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② 2020. 7. 20.경
“갑(피고들)과 을(원고)이 2020. 6. 10. 체결한 시공계약서(3,765,000,000원)가 최종
시공계약서이며, 2020. 7. 15. 체결한 시공계약서(3,440,000,000원)는 HUG 기금 제출용이며,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을 양사가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 수도, 가스인입비 17,327,720원(총
지출금액 47,327,720원 중 30,000,000원은 원고가 2021. 5. 25. HUG로부터 인입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7,051,390원, 건물보존등기 비용,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93,164,100원, 투시도 용역비 3,300,000원 등(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기타비용”이라고 한다) 합계 210,843,21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계약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300,000,000원, HUG 용자 실행금액 2,586,88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액 250,547,810원,
보증료 환급액 49,734,230원 등 합계 3,187,162,0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7,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각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정산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기타비용 합계 210,843,210원을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금 210,84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 2,745,600,000원과 이 사건 기타비용 합계 240,843,210원 등 도합 2,986,443,210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여 3,187,162,0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차액인 200,718,830원(=3,187,162,040원 - 2,986,44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외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이 사건 기타비용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본소 청구로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기타비용 합계액을 모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반환을 반소 청구로서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②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원래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이 사건 기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3,187,162,04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 사건 기타비용의 합계액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사실상 다툼이 없고, 다만, ‘원고가 HUG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인입비 30,000,000원’을 이 사건 기타비용에 반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이 부분 산정금액이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위 ①항과 ②항의 합계액)과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3,187,162,040원)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 또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의 각 인용 여부 및 그 범위가 결정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HUG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기존에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300,000,000원에, HUG로부터 용자로 원고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보증료 환급금액’의 총 합계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187,162,040원에서 원고가 HUG로부터 지급받은 인입비 30,000,000원을 공제한 3,157,162,040원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2020. 8. 14.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 2,74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2020. 8. 14.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2,74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액, 원고가 HUG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용자받는 금액, 부가가치세 환급액 및 보증료 환급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수차례 변경을 거쳐서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최종적인 공사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HUG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계약서일뿐이고, 그 기재된 공사대금은 실제로 합의된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수차례 작성된 계약서들 중에는 HUG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계약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HUG 제출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계약서 표지에 "HUG 임대상가조성기금"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어 HUG 제출용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2020. 7. 14.자 작성 계약서).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2020. 7. 15.1) 체결한 시공계약서(3,440,000,000원)는 HUG 기금 제출용이며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을 양사가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나 '개발 사업보고서 작성 및 투시도가 HUG 기금 신청 제출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업비 지급 확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계약서 표지에 HUG 제출용임을 명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어디에도 HUG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들이 별도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HUG 제출용으로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확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753.37평의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가, 이후 신축하는 연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연면적 48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건축 규모가 축소되면서 공사대금 또한 감축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이전인 2020. 7. 31.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을 제16호증)2)에 의하면 위 계약서상 평당 공사금액은 약 549만여 원(부가가치세 포함)3) 이고, 그 후에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상 평당 공사금액은 57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4) 으로 비슷한 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공사대금을 3,157,162,040원으로 본다면 평당 공사금액은 약 657만여 원5) 이 되어 크게 차이가 난다.

㉔ 피고 C과 원고의 K 이사의 2021. 12. 7.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5층 건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건축 규모를 축소하면서 작성된 HUG 제출용 계약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6) 그러나 피고 C과 원고 이사 K의 2022. 5. 4.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 이사 K에게 “마지막 5층으로 변경할 당시 계약서는 차후 작성해 주겠다고 하셔서 허그도장을 찍었는데 계약서는 작성도 안해 주셨고”라고 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 이사 K은 ”준공도면, 내역서 이미 다 드렸습니다. 5층 계약서도 드렸습니다. 인감도장까지 다 찍어서 허그까지 제출했었습니다“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최종) 도급계약서를 교부한 점을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7)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실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합의된 진정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최종 합의된 공사도급계약서’이자 ‘HUG에 제출한 계약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㉕ 원고는, HUG가 2020. 8. 당시 연면적 평당 5,2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한도로 공사비의 용자를 승인하고 있었으므로(2023. 9. 1.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실조회회신 2, 3면), HUG로부터의 용자 승인을 위하여, 평당 계약금액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시 5,200,000원)으로 산정한 2,745,600,000원(= 480평 × 5,720,000원/평)을 계약금액으로 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당시 HUG의

업무지시사항에 의하면 ‘HUG의 용자한도를 초과하는 공사금액은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2023. 9. 1.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실조회회신 3면), 공사금액이 HUG의 용자 상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HUG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용자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공사대금액 중 HUG 용자한도액까지는 HUG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용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차주가 자기자금으로 부담하면 될 것이다), 원고로서는 공사대금을 (HUG 용자한도까지)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할 실익은 있을지언정, HUG의 용자 상한액에 맞추어 공사대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특별한 유인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HUG로부터 용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용자비 상한에 맞추어 낮게 산정한 공사대금을 기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피고 C와 원고의 K 이사의 2021. 12. 7.자 통화 녹취록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HUG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업계약서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던 점(갑 제9호증의 1 제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와 피고들이 HUG 제출용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업계약서가 아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계약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㉞ 원고는 2022. 3. 31.경 이 사건 기타비용에 관한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가압류 신청 당시 가압류신청서에 ‘2020. 8. 14.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그 용역대금은 건축공사비 2,49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는 내용으로 확정하였다’고 기재하여8)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가 진정한 도급계약서임을 전제로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HUG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실제와 달리 작성된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및 보증료 환급액 등을 포함한 합계 3,157,162,040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기타비용(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항들)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액수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자체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을 초과한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고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수차례 변경해오면서 계속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왔고, HUG 제출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서까지 작성해왔던바, 이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기존에 유효하게 작성된 계약서(특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아무런 문서 작성도 없이) 상호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기존에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 300,000,000원에, HUG로부터 용자로 원고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액, 보증료 환급금액9)'의 총 합계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그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기타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타비용은 원래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구상)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합계 210,843,210원(= 전기, 수도, 가스인입비 17,327,720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7,051,390원 + 건물보존등기 비용,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93,164,100원 + 투시도 용역비 3,300,000원)이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기타비용이 240,843,210원(= 전기, 수도, 가스인입비 47,327,720원¹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97,051,390원 + 건물보존등기 비용,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93,164,100원 + 투시도 용역비 3,3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기타비용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원고에게 유리하게) 240,843,210원으로 계산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745,600,000원 및 ② 이 사건 기타비용 상당액 240,843,2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3,187,162,0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18,830원(= 3,187,162,040원 - 2,745,600,000원 - 240,843,210원)을 초과 지급한 셈이다.

따라서,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반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초과 지급받은 200,718,8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반환) 의무일 이후로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2. 8.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1)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 반소에 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민아, 판사 양석용

1) '2020. 7. 14.'의 오기로 보인다.

2) 2020. 7. 31. 작성된 계약서(을 제16호증)는 최초로 공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변경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점, 위 계약서에는 ‘본 시공계약서 전에 체결한 시공계약서는 무효이며, 본 시공계약서가 효력이 있음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확인한다’(제11조)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는, HUG 제출용으로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3) $3,311,000,000\text{원} / 602.58\text{평} = 5,494,706\text{원/평}$ (원 미만 버림)

4) $2,745,600,000\text{원} / 480\text{평} = 5,720,000\text{원/평}$.

5) $3,157,162,040\text{원} / 480\text{평} = 6,577,420\text{원/평}$ (원 미만 버림).

6) 갑 제9호증의1 제7면(전자기록 면수 기준. 이하 같다) 참조.

7) 을 제11호증 참조.

8) 을 제10호증의1 제3면 참조.

9) 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이나 보증료 환급액 등은 그 구체적인 액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비용 관련하여, 원고는 기 지출한 47,327,720원 중

30,000,000원을 2021. 5. 25.HUG로부터 인입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위 기지출비용 47,327,720원 전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